



코로나19 대처하기

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, 글렌데일 주민은 가정, 주거유닛, 주거하는 장소에서 밖에 있을 때 항상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하며,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이다.

- 혼자 있거나 오직 가족과 있는 경우
- 2세 이하 어린이 (신생아 포함)
- 호흡 문제가 있는 어린이
- 허가된 활동을 하는 특수 장애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요건을 따르고 정부 지시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건국 규정을 전부 따르면 얼굴 가리개의 착용이 제외된다.
- 연방, 주, 지방법, 혹은 직장 규정에 따라 얼굴 가리개로 인해 업무와 관련된 위험이 생기는 경우
- 숨쉬기 곤란하거나, 의식이 없거나, 불구자거나, 도움없이 얼굴 가리개를 벗지 못하는 사람
- (i) 적어도 6피트 공간이 있고 (ii) 다른 사람이 며칠동안 같은 공간에 있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실내공간
- (i) 혼자 있거나 오직 가족과 있는 경우, 30 피트 내에 아무도 없는 것을 조건으로 한 외부공간. 얼굴 가리개를 눈에 보이게 두고 다른 사람이 30피트 내에 있으면 입과 코를 가릴 준비를해야 한다.
- 개인 사무실에 혼자 있거나 공유하지 않고 미리 경고하지 전에 다른 사람이 방문할 가능성이 적은 장소에 있는 경우
- 자동차 안에 있고, 혼자 있거나 또는 같은 가족이나 거주지 유닛에 사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경우. 응급요원, 요식업 근무자, 가족이 아닌 사람과 접촉하는 등의 목적으로 창문으로 내려야만 하는 경우는 예외.
- 실내나 실외에서 먹고 마시는 경우